

성적경고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내규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성적경고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재학 중 성적불량으로 인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을 특별 지도하기 위한 제반업무와 관련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내규는 학칙 제33조(성적경고) 제 1항에 의거한 성적경고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업무처리 및 관리) ① 성적경고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 처리 및 관리는 교무처 교무팀이 한다.

1. 명부 작성
2. 성적경고자 대상 통보
3. 교내 유관부서 대상 성적경고자 명부 통보
4. 지도교수 성적경고자 상담 결과 취합

② 성적경고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 처리 및 관리는 미래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가 한다.

1.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2.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결과 통보

③ 성적경고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 처리 및 관리는 학생처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가 한다.

1.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결과 통보

④ 성적경고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 처리는 지도교수가 한다.

1. 성적경고자 상담 실시
2. 성적경고자 상담 일지 제출

⑤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4조(명부 작성 및 통보) 교무처 교무팀은 당해학기 성적처리가 마감 된 후 1주일 이내 성적경고자 명부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 학과(부) 및 관련 부서에 성적경고자 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교수 성적경고자 상담) ① 성적경고자의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성적지도, 대학생활 지도 및 수강지도 등의 성적경고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담 결과를 소속 학부(과)를 경유하여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 시작일 전에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성적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 외에 제3조 제2항의 미래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학업지원 프로그램과 제3조 제3항의 학생처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는 성적경고를 1회 받은 학생에 대해서도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3조 제2항의 미래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학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제3조 제3항의 학생처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할 권유할 수 있다.

제6조(학습지원 프로그램 계획·운영 및 지원) 미래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는 성적경고자, 학업성적 향상 노력자를 대상으로 학습법 습득, 학업성취도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심리상담 프로그램 계획·운영 및 지원) 학생처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는 성적경고자, 학업성적 향상 노력자를 대상으로 대학생활 향상, 심리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사항) 성적경고자 등에 관한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의 시행에 따라 기존 「성적경고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은 2021년 1월 18일부로 폐지한다.